

「社會科學研究」 투고규정 · 편집규정 · 심사규정

2002. 10. 1	제정
2006. 8. 1	개정
2007. 7. 1	개정
2010. 3. 1	개정
2012. 12. 1	개정
2015. 3. 1	개정
2017. 6. 1	개정
2018. 8. 1	개정
2020. 1. 2	개정

社會科學研究 심사규정

가. 심사위원 선정

- 「사회과학연구」(이하 본 학술지라 칭함)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편집위원회는 모든 제출원고에 대하여 한 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,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. 이 때 원고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.
-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-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나. 심사절차

-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, 연구의 창의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, 구성·집필의 적절성, 논문 전개의 명료성, 활용자료의 충실도, 학술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
-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「논문 심사결과 통보서」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, <판정>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.

논문 심사 의견서 양식

논문심사의견서

* 아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

심사위원 성명			
소 속		생년월일	
주 소			
e-mail		은행명 계좌번호	
연락처 (핸드폰)			

논문제목	
------	--

〈심사평가〉

항 목	점 수	10	9	8	7	6	5	4	3	2	1
주제의 격결성											
연구의 창의성											
연구방법의 타당성											
구성·집필의 격결성											
논문 전개의 명료성											
콜럼자료의 충실도											
학술적 가치											

〈판 점〉

개재 가	수경 후 개재	수경 후 재심	개재 불가
70~69	62~56	55~43	42이하

- 1) 게재 가 :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- 2) 수정 후 게재 :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) 수정 후 재심 :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완 및 수정 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4) 게재 불가 :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거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4. 심사위원은 “심사평”을 첨부하여 심사소견 및 판정내용과 ‘수정사항’ 또는 ‘게재 불가 사유’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5.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.
6.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출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. 한편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초심에서 ‘게재 가’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,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7. 재심사는 ‘게재 가’와 ‘게재 불가’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,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‘게재 가’가 둘 이상이면 ‘게재’로 최종 확정한다.
8.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이 이루어져야 게재할 수 있다.
9.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사유가 명시된 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. 재투고된 논문은 신규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

다. 수정지시

1. 논문의 원고작성 형식이 본 학술지에 맞지 않거나 심사 결과 “수정 후 게재”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.
2.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
라. 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02. 10. 1)
마.

바. 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06. 8. 1)
사.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07. 7. 1)
아.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10. 3. 1)
자.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15. 3. 1)
차.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17. 6. 1)
카.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(2018. 8. 1)